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교부용)

현 행	개 정	비고
제1조 ~ 제13조 <기재 생략>	제1조 ~ 제13조 <현행과 동일>	
제1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	제14조 (손실부담 및 면책)	
① <기재 생략>	① <현행과 동일>	
② 은행은 이용자간에 물품의 배송, 운송, 하자, 반	② 은행은 이용자간에 물품의 배송, 운송, 하자, 반	
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	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	
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<신설>	에 대하여 <삭제>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다만,	
	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	- 약관변경 권
	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	고 반영
③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주소(이메일 주	③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주소(이메일 주	
소 포함)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	소 포함)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	
지지 아니합니다 <신설>	지지 아니합니다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	
	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	- 약관변경 권
	부담합니다.	고 반영
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, 도난 등	<u></u> ④ <삭제>	
의 통지를 받은 경우, 이용자의 고의, 중대한 과실	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	- 항목삭제
이 없는 한 분실, 도난 등의 통지 이후 접근매체의	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9조,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	- 약관변경 권
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	령」제8조를 적용합니다.	고 반영
하여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		
경과이자를 보상하기		
로 합니다. <신설>		
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의	⑤ <u><삭제></u>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		- 항목삭제
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		
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		
1.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		
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		
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		
2.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		
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		
오		
3.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		
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		
<u>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</u>		
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		
노출하 거나 방치한 경우		
4.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		
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		
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		
제15조 ~ 제19조 <기재 생략>	제15조 ~ 제19조 <현행과 동일>	
<u><신설></u>	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	
	거쳐 제공됩니다.	